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2. 6. 21.

운영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: 2022년 6월 8일

나. 발 의 자: 정선희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6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6. 20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('22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,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의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규칙안임.

#### 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2조는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, 사무국장, 팀장의 직무대리를 규정함.
- 안 제3조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가 어려운 경우 의장이 지정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
- 안 제4조는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하는 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본 규칙안은 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한 규칙안으로 「지방자치법」 과 「직무대리규정」 등 상위법령에서 소속기관이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, 『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』 에 맞춰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(정선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2년 6월 일

발의자: 정선희 의원 외 4명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규칙의 목적 (안 제1조)

나. 법정대리,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~제3조)

다.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## 3. 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입법예고 : 생략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의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법정대리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(이하 “국장”이라 한다)의 결원, 출장, 휴가, 그 밖의 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(이하 “대리”라 한다)한다.

1.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.
2.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」에 규정된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.
3.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(담당)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.

**제3조(지정대리)**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

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(별지서식)로써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책임)**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직무대리 명령서

1. 직무대리 직명:
2.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:
3. 직무대리 기간: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직위

성명

(서명 또는 인)